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7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오염사고 보고의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오염사고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절차 등)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오염사고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사고보고를 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해야하는 오염예방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사고로 인해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식품등 및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의 폐기 또는 그 계획의 수립
2. 사고가 발생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에 대한 세척·소독·교체 또는 그 계획의 수립
3. 종사자 대상 오염예방조치와 관련한 안내·지도
4. 그 밖에 오염예방에 필요한 조치

제101조제1항 중 “법 제101조제1항제3호”를 “법 제101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23 Ⅱ 제1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5 일	영업정지 10 일	영업정지 20 일
--	--------	-------------	--------------	--------------

별지 제51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5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1호의4서식 및 별지 제51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식 품 등 오 염 사 고 보 고 서					
보고자 (영업자)	영업소명칭 (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영업등록(신고)번호	
	대표자			연락처	
오염 발생 개요	발생 일시			발생 장소(시설)	
	발생 경위 및 피해 상황 (이물 종류 등 포함)				
	오염발생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제품정보	전체 생산량(kg)		오염된 생산량(kg)	
				(오염 발생 우려 포함)	
오염 예방 조치 (계획)	오염발생(우려) 제품 폐기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세척·소독·교체				
	종사자 대상 안내·지도				
	기타				
「식품위생법」 제4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오염사고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관련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명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0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절차 등)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u>오염사고보고서</u> (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오염사고보고를 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해야하는 오염예방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u> <u>1. 해당 사고로 인해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식품등 및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의 폐기 또는 그 계획의 수립</u>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① <u>법 제101조제1항제3호</u>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총리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란 법 제88조제2항제11호에 해 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생 략)	2. <u>사고가 발생하여 오염이 우 려되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에 대한 세척·소독·교체 또는 그 계획의 수립</u> 3. <u>종사자 대상 오염예방조치와 관련한 안내·지도</u> 4. <u>그 밖에 오염예방에 필요한 조치</u>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① <u>법 제101조제1항제4호</u> ----- ----- ----- ----- -----. ② (현행과 같음)
--	---